
과업지시서

| | |
|------|--------------|
| 사업명 | 서버가상화 시스템 증설 |
| 주관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7.

목 차

| | |
|------------------------|---|
| I. 일반사항 | 2 |
| 1. 목 적 | 2 |
| 2. 사업개요 | 2 |
| 3. 사업범위 | 2 |
| 4. 입찰 참가자격 | 3 |
| 5. 제출서류 | 3 |
| II. 특수조건 | 4 |
| 1. 적용범위 | 4 |
| 2.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 4 |
| 3. 납품 및 설치 | 4 |
| 4. 검수 및 시험운영 | 5 |
| 5. 교육 및 운영지원 | 6 |
| 6. 하자보증 및 기술지원 | 6 |
| 7. 보안유지 | 6 |
| 8. 계약의 해지 | 7 |
| 9. 기타사항 | 8 |
| III.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 9 |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의 “서버가상화 시스템 증설” 사업에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 간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버가상화 시스템 증설

나. 구매내역 : Flash 전용 스토리지(2대) 및 부대장비

※ 상세내역은 “Ⅲ.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참조

다. 납품 및 설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 정보통신실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마. 하자보증 :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

3. 사업범위

시스템 구매 및 설치의 범위는 아래 각 사항에 준하며, 세부내역은 “특수조건”,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에 따른다.

가. 서버가상화시스템 스토리지 및 부대 장비 신규도입

나. 기 운용 중인 서버가상화 시스템 및 스토리지와 연동작업

다. 기 운용 중인 VM 스토리지 재구성

라. 최적의 성능향상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 제공 및 교육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의한 정보통

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국가종합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018020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라. 입찰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마. 제품 품질의 신뢰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물품 제조사(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바.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5.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아래의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시기 | 제출 서류 |
|----------------|--|
| 계약 시 | - 제조사(또는 공급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원본 |
| 계약 후 10일 이내 | - 사업수행계획서 (납품물품 상세명세서, 납품 및 작업 일정표, 참여인력 투입 현황 및 비상연락체계 포함) -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자) |
| 검수 시 (사업완료) | - 사업완료보고서 (설치 내역서, 납품물품 단가명세서, 설치 사진, 유지보수체 계도 포함) -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 보안 협약서(대표자 및 참여자) |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서버가상화 시스템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일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납품 및 설치, 검수 및 시험운영, 교육 및 운영지원, 보안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세부규격을 만족하는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약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내부망 운용에 영향 없이 교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망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체 후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타 응용 SW와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요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 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투입인력이 사업 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마.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물품의 납품·설치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처리한다.

3. 납품 및 설치

- 가. 계약상대자는 ‘III.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

을 지원하는 상위 규격의 물품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련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사고조치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 나.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조사 단종 및 1년 이내에 단종계획이 없어야 하며, 납품 내역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설치 변경 등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현재 운용 중인 서버가상화 시스템 스토리지의 운용환경 및 구성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100% 호환되는 물품으로 일괄 납품·설치하여 시스템 운용에 영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라. 물품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마. 물품의 납품, 설치작업, 시험, 성능보증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운반·설치·구성 및 시험 도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성능저하, 제품 결함, 장애 발생, 저작권 분쟁 등)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책임 배상하여야 한다.

4. 검수 및 시험운영

-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물품 납품, 설치 및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 나. 제품 규격의 확인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할 경우 증빙서류 별도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검수기간 이내에 입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장비내역(사진자료 포함) 및 시험운영 관련 주요항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 시험을 실시하며 네트워크 스위치의 정상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최종 검수결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H/W 및 S/W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에는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하자보증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물품에 대한 일괄적인 유지보수체계를 갖추고 하자보증기간을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예방점검을 위해 월1회 이상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중 제품에 중대한 결함 및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담당자 감독 하에 동일 신품(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에 SW(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펌웨어 등)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장애통보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6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고 장애처리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연장 조치할 수 있다.

7. 보안유지

-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업무상 정보, 개인정보,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 기술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 변동 시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마. 사업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기록 등은 발주기관이 허락하지 않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납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 되면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사.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자.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또는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화 용역사업수행 중에 정보보안 상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하상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 다. 사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되었을 때
-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납품관련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9. 기타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합의서 내용이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가 우선 적용된다.
- 다. 본 구매 규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수칙준수교육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II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 구 분 | 상 세 규 격 | 수량 |
|------------|---|----------|
| 스토리지 규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ash 전용 스토리지(All Flash Storage) ○ 물리적 용량 : 120 TB 이상 용량 제공 ○ Usable 80TB 이상(Raid 6 및 1개 이상 Hot Spare 구성 시) 용량 제공 ○ 디스크 타입 : 7.68TB 용량의 SSD로 구성 ○ 확장성 : On-Line 으로 Disk 증설 제공 ○ Cache 메모리 128GB 이상을 제공 ○ Active-Active Dual Controller 제공 ○ 10GbE * 8port 이상 제공 ○ 16Gbps FC * 8port 이상 제공 ○ 스토리지와 서버 연결을 위한 광케이블 제공 ○ 서버와 SAN으로 연결 구성이 가능 ○ RAID 타입 : RAID 6 또는 동등이상의 디스크 보호 기술 제공 ○ 컨트롤러 2개 이중화 기능 제공(컨트롤러 Scale-out 지원) ○ 모든 하드웨어 컴포넌트는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을 것 ○ Disk, Power Supply, Interface, Fan에 대해서 Hot Swap 기능 제공 ○ 전원 장애 시 캐쉬데이터 보호기능 제공(BBU 제공) ○ 다양한 OS 환경지원 (UNIX, Windows, LINUX,등) ○ 백업 및 복구를 위한 데이터 보호 기능(Snapshot, Clone등) 제공(라이선스 포함) ○ 원격지 동기 및 비동기 복제 기능 제공(라이선스 포함) ○ 별도의 장비 없이 스토리지가 Active/Active 메트로 클러스터 기능 제공(라이선스 포함) ○ 정책 기반의 QoS 트래픽 컨트롤 및 우선 순위 설정 기능 제공 ○ Thin Provisioning 기능 제공 ○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등 스토리지 관리 솔루션 제공 ○ 디스크 수명 주기 확인 기능 ○ 데이터 압축 및 중복제거 기능 제공 | 2대 |
| 부대장비 규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ocade 사 16Gbps SAN Switch 24port(기존12Port, License 추가) ○ 서버 R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 : 1800(H)*600(W)*1000(D), 36 Unit - 전원 : 콘센트 AC220V-15A-12Way 이상 * 2개 - 전류/전압/전력량/온도 Monitoring System | 2대 1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BA Card 16Gbps 2port | 2개 |
| 하자보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완료후 3년 하자보수 제공 | |
| 기술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스토리지 절체 및 신규 스토리지 운영전환 지원 ○ 기존 시스템과 물리적 구성환경을 고려하여 기 운영중인 VM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포함(업무의 무중단 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 ○ 신규 도입장비의 구성 및 복제 테스트, 최적화 및 안정화 지원 |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구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 보 통 | <p>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p> <p>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p> <p>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p> <p>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p> | <p>○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p> <p>○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p> <p>○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p> |
| 경 미 | <p>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p> <p>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p> <p>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p> | <p>○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p> <p>○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p> |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 위약금 부과 금액

| 구분 | 위규 수준 | | | |
|--------|----------|--------------|-------------|-------------|
|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계약금액의 10% 이하 | 계약금액의 5% 이하 | 계약금액의 3% 이하 |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_____년 ____월 ____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_____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게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_____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직 급 :

주 소 지 :

생년월일 :

성 명 :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정보누출금지 협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_____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